

<p>○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 서울特別市行政書士運營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本 條例 廢止案은 서울特別市長이 95年 8月 14日 提案하였고, 95年 8月 16日 字 우리 委員會에 回附하였으며, 오늘 第80回 臨時會 第2次 內務委員會에 上程한 것입니다.</p> <p>提案說明의 要旨는 조금전에 內務局長이 說明하였으므로 생략하고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p> <p>.....</p> <p>(參 照)</p> <p>서울特別市行政書士運營條例廢止條例案檢討報告</p> <p>1. 委員會 回附</p> <p>가. 提案者 및 提案日字: 서울特別市長('95. 8.14)</p> <p>나. 回附日字: '95.8.16</p> <p>다. 上程日字: 第80回 臨時會 第2次 內務委員會('95.9.22)</p> <p>2. 提案說明의 要旨</p> <p>가. 提案理由</p> <p>○行政書士法 및 行政書士法施行令이 行政書士法('95.1.5 法律 第4874號) 및 行政書士法施行令('95.7.20 大統領令 第14739號)으로 全文 改正公布됨에 따라 舊法에 依해 制定된 서울特別市行政書士運營條例를 廢止하고자 함.</p> <p>나. 主要骨子</p> <p>○舊法에서는 市·道知事가 行政書士業을 許可하되, 條例規定에 따라 區廳長에게 委任하여 施行하여 왔으나, 法改正에 依해 許可制가 廢止되고, 市·道知事의 資格確認을 거쳐 大韓行政士會에 登錄制로 變更되었음.(法 第8條)</p> <p>다. 參考事項</p> <p>○關聯法令: 行政士法 第8條 및 同法施行令 第17條</p> <p>○豫算措置: 別途措置 必要없음.</p> <p>○合 意: 必要없음.</p> <p>○其 他: 條例案(別添)</p> <p>.....</p> <p>2페이지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現行 條例는 1976年 6月 22日 條例 第</p>	<p>1048號로 制定하여 78年 4月 18日, 79年 11月 15日, 79年 12月 13日, 81年 11月 13日, 85年 10月 4日, 90年 1月 29日 6次에 걸쳐 改正한 條例로써, 行政書士法 및 同法施行令에 의거 市長이 區廳長에게 委任한 事項과 기타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기 위해 制定된 것입니다.</p> <p>條例制定 根據 上位法律인 行政書士法 第5條 許可에는 行政書士의 業務는 市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고, 同法 第29條 權限委任에 의거 市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거 區廳長에게 許可權을 委任하도록 規定하였으며, 同法施行令 第22條의 規定에 의거하여 區廳長에게 申告 處理, 行政書士會 報告事項 受理 등의 權限을 委任하였고, 現行 條例에서도 區廳長에게 法令에서 委任한 權限과 施行에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습니다.</p> <p>關聯法令의 改正事項을 보면, 政府에서는 國民들의 다양화되고 質 높은 行政需要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行政書士의 名稱을 行政士로 변경을 하고, 行政士의 業務를 他人의 委囑을 받아 書類를 作成하는 외에 行政關聯 相談과 諮問, 申請과 請求의 代理, 사실 調査 및 확인 등으로 다양화하며, 合同 行政書士事務所 制度를 도입 補完하여 民主化된 社會의 行政서비스를 自律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現行 條例의 根據 上位法令인 行政書士法 및 同法施行令을 全文 改正하여, 行政士法은 95年 1月 5日 法律 第4874號로, 行政士法施行令은 85年 7月 20日 大統領令 第14739號로 改正 公布하였습니다.</p> <p>이에 따라 區廳長에게 委任하여 施行하던 行政書士業의 許可制가 廢止되고, 市·道知事의 資格 확인을 거쳐 大韓行政士會에 登錄制로 변경됨에 따라 舊法인 行政書士法 및 同法施行令에 의거 制定된 서울特別市行政書士運營條例는 制定 上位 根據法令이 全文 改正되고 條例에 委任된 區廳長의 權限이 없어졌으며, 기타 施行에 필요한 事項이 없어졌습니다.</p> <p>결론적으로 本 條例 廢止案은 現行 條例의 上位根據法令인 行政書士法 및 同法施行令이 全文 改正되고, 條例에서 規定된 區廳長의 權限과 施行에 필요한 事項은 새로 改正된 行政士法 및 同法施行令. 規定에는 廢止되었으므로, 條例制定 體系로 보아 現行 條例는</p>
--	---